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8년도 제 1회)

1. 일 시 : 2018년 2월 6일 10시 30분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회의소집통보일시	2018. 1. 22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3. 참석이사 : 5명 (이사장 남궁숙
이사 최문호, 박영창, 박달심, 이상우)

4. 불참이사 : 3명

5. 제적이사 : 0명

6. 안 건 : 가. 2017학년도 제1회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나. 2018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다. 2017학년도 제3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라. 2018학년도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마. 2017학년도 제3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바. 2018학년도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사. 교장 정년퇴직의 건
 아. 교원 명예퇴직의 건
 자. 교원 휴직의 건
 차. 신규교사 임용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사 : 2017년도 제4회 이사회 안건인 2017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2017학년도 제2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교원 복직의 건, 기간제교사 면
 직의 건, 2018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의 건,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선정의 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의 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교육의 건은 2017년 11월 28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1회 법인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장 : 예산안에 대해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에서는 재산수입 128,000원이 증액된 12,032,000원, 투자수입 1,000원이 감액된 1,000원, 기부원조금 1,500,000원이 증액된 1,500,000원, 잡수입 8,000원이 증액된 54,000원이 되며, 세출에서는 이사회비 68,000원이 증액된 268,000원, 사무비 2,000원이 증액된 198,000원, 재산조성비 80,000원이 감액된 2,125,000원, 전출금 209,000원이 증액된 9,053,000원, 수혜금 1,500,000원이 증액된 1,500,000원, 잡지출 64,000원이 감액된 444,000원이 되어 세입세출 각각 1,635,000원이 증액된 13,588,000원이 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영창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7학년도 제1회 법인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635,000원이 증액되어 세입 세출 각각 13,588,000원이 됨을 선포합니다.



◆2018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에서는 재산수입 12,367,000원, 투자수입 1,000원, 이월금 1,000원, 잡수입 791,000원이며,

세출에서는 이사회비 200,000원, 사무비 406,000원, 재산조성비 3,255,000원, 전출금 8,855,000원, 잡지출 444,000원이 되어 세입세출 각각 13,160,000원이 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재산유지비에 편성된 수익용 건물 정기점검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간사 :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할기관에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본 법인이 공동소유 중인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수익용 건물의 검사 기간이 2018년도에 도래하여 전체 용역비 중 공동소유주가 75%, 본 법인이 25%를 부담하여 격년제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김제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창 : 간사의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8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13,160,000원이 됨을 선포합니다.

◆2017학년도 제3회 만경중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은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4,742,000원이 감액된 1,029,107,000원이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356,000원이 감액된 20,255,000원이 되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8,339,000원이 감액된 804,197,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394,000원이 감액된 30,402,000원, 기본적교육활동 7,662,000원이 증액되어 34,914,000원, 선택적교육활동 12,000원이 감액되어 8,852,000원, 교육활동지원 5,300,000원이 증액된 112,375,000원, 학교일반운영 6,803,000원이 감액되어 87,573,000원, 학교재무활동 800,000원이 감액된 0원으로 세입 세출 각각 4,386,000원이 감액된 1,078,31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집행잔액과 목적사업비 교부액 및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58,160원이 발생하여 2018학년도로 명시 이월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별 문제가 없으므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전원 찬동으로 2017학년도 제3회 만경중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4,386,000원이 감액되어 세입 세출 각각 1,078,313,000원이며, 2017학년도 목적사업비 교부액인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58,160원이 발생하여 2018학년도로 명시 이월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2018학년도 만경중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에서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034,169,000원, 기타이전수입 2,000,000원이 편성되고,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32,746,000원, 행정활동수입 720,000원이 편성되고, 기타수입 중 전년도이월금 10,000,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865,677,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38,669,000원, 기본적교육활동 23,220,000원, 선택적교육활동 3,450,000원, 교육활동지원 61,489,000원, 학교일반운영 86,330,000원, 학교재무활동 800,000원이 편성되어 세입세출 각각

1,079,635,000원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직원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58,160원이 2018학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집행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예산액인 3차 추경예산액이 표기되어야 하지만 이사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에듀파인 프로그램 상에서 2차 추경 예산액이 전년도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교육청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확정처리하여 마지막 추경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최종 표기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호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8학년도 만경중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1,079,635,000원이 됨을 선포합니다.

◆2017학년도 제3회 만경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은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66,386,000원이 증액된 2,532,885,000원, 기타이전수입 383,000원이 증액된 21,190,000원이며,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46,627,000원이 감액된 362,867,000원, 행정활동수입 162,000원이 감액된 3,795,000원이 되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984,000원이 증액된 1,478,176,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2,576,000원이 감액된 474,780,000원, 기본적교육활동 18,105,000원이 증액되어 95,392,000원, 선택적교육활동 773,000원이 증액되어 86,377,000원, 교육활동지원 7,093,000원이 증액된 146,866,000원, 학교일반운영비 5,601,000원이 증액되어 151,479,000원으로 세입 세출 각각 19,980,000원이 증액된 2,921,35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집행잔액과 목적사업비 교부액인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비 집행잔액 6,140,000원이 발생하여 2018학년도로 명시 이월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달심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7학년도 제3회 만경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19,980,000원이 증액된 2,921,355,000원이며, 2017학년도 명시이월금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비 6,140,000원이 2018학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합니다.

◆2018학년도 만경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세입에서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815,263,000원, 기타이전수입 22,502,000원이 편성되고,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 288,093,000원, 행정활동수입 704,000원이 편성되고, 기타수입 중 전년도아월금 17,34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1,456,124,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263,701,000원, 기본적교육활동 54,776,000원, 선택적교육활동 26,705,000원, 교육활동지원 62,670,000원, 학교일반운영 131,653,000원, 학교시설확충 147,275,000원, 학교재무활동 1,000,000원이 편성되어 세입 세출 각각 2,143,904,000원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비 집행잔액 6,140,000원이 2018학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 집행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호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8학년도 만경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2,143,904,000원이 됨을 선포합니다.

◆교장 정년퇴직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본 법인이 유자·경영하는 만경중학교 교장 '이금연'이 2018년 2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만경중학교 교장 '이금연'은 1955년 12월 20일 생으로 1984년 11월 7일부터 33여년간 본 법인에 미술교사 및 교장으로 재직한 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3 교원 정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교육공무원법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한 정년퇴직이므로 2018년 2월 28일자로 면직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중학교 교장 '이금연'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3의 정년퇴직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8일자 정년퇴직으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교원 명예퇴직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845(2018.01.16)에 의거 2018년 2월말 사립교원 명예퇴직자 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만경고등학교 교사 '서현숙'의 명예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만경고등학교 교사 서현숙은 1958년 11월 11일 생으로 1980년 4월 25일부터 38여년간 본 법인에 프랑스어 및 일어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4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본인 의사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한 명예퇴직이므로 2018년 2월 28일자로 면직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우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영창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고등학교 교사 '서현숙'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4 명예퇴직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으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교원 휴직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만경중학교에 재직 중인 윤리 교사 '강영화'는 자궁암 진단을 받아 질병치료를 위하여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1년간 질병 휴직을 하고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 결과 갑작스런 원인미상의 미생물의 재발에 의한 질병(자궁암)으로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바, 수술 후 병의 증상이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본 법인 정관 제44조 1항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의 질병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본 법인 정관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직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만경중학교 교사 '강영화'의 2차 질병 휴직 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사가 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휴직기간은 이사회 심의가 확정되는 다음날인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1년입니다.

다만, 만경중학교 교사 '강영화'는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1년간 1차 질병휴직을 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1년간 휴직이 연장되어 2차 질병 휴직을 하면 추후 질병으로 더 이상 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2018학년도 1학기 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1년 후 복직이 불가할 경우 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해당교사가 2차 질병 휴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해당 과목에 대한 결원대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간사 : 현재 만경중학교 및 만경고등학교의 법인 전체 교사 현원이 법정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질병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므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직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니 만경중 교사 '강영화' 의 2차 질병 휴직을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박달심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중학교 교사 '강영화' 는 2018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1년간 2차 질병 휴직을 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다만, 상기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만경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 더 이상의 질병 휴직은 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사 임용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17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본 법인 산하 만경중학교는 1명, 만경고등학교는 3명 총 4명의 정규교원이 부족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부족한 정원 4명 중 2명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나머지 2명은 2018학년도에 만경고등학교에서 영어 1명 체육 1명을 신규교사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북사립중고법인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사립학교 중등 신규교사 임용 경쟁 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신규교사 임용 절차는 전북사립중고법인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1차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채용 인원의 7배수 합격자를 본 법인으로 통보하면 만경고에서 제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제3차 심층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하여 학교장이 이사회에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신규교사를 임용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13일에 시행된 제1차 필기시험 응시자는 영어 16명, 체육 12명으로 시험 결과 본 법인에서는 영어 1명, 체육 6명이 제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2차, 제3차 시험은 영어 1명, 체육 6명의 응시자가 모두 서류를 접수하여 응시 자격을 갖추었으며 영어는 2018년 1월 23일, 체육은 2018년 1월 24일에 각각 제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평가, 제3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채용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최종합격대상자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합격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배점은 제1차 필기시험 20%, 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40%, 3차 심층면접 40%를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시험 결과 영어교과는 1차 필기시험 결과 응시대상자가 1명으로 제1차 점수 8점, 제2차 점수 23.28점, 제3차 19.4점으로 총합계 51.12점이 되었으나 제3차 심층면접 점수가 49.6점으로 50점 미만으로 과락이 되어 최종합격대상자에서 탈락되어 금번 영어교과는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체육교과의 경우 1차 필기시험 결과 응시대상자가 6명으로 최종 3차까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박현

상' 이 제1차 점수 16.4점, 제2차 점수 30점, 제3차 점수 28.32점으로 총합계 74.72점이 되어 6명 중 최고 점수를 득하여 1순위로 최종합격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금번 시험은 별도로 법인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만경고에서 시행한 임용 절차에 따라 시험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대상자 1인을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법인이사회에 제청하여 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만경고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영어교과는 응시자 1명이 제3차 시험에서 과락으로 탈락하여 임용대상자가 없으며 체육교과는 응시자 6명 중 최고득점자인 '박현상'이 최종합격대상자 선정되어 학교장이 제청하였으며, 금번 법인이사회에서 신규교사 임용이 확정되면 2018년 3월 1일자로 만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게 되며 추후 공고문에 게시된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상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기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체육교과는 신규교사가 1명 충원되었지만 영어교과의 경우 다시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결원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게 됩니까?

간 사 :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어교과는 신규교사 채용을 하지 못하므로 2018학년도에 기간제교원을 2명 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이상우 : 만경고등학교의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교사 임용이며, 필기시험부터 최종 면접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합격한 대상자로 학교장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으므로 만경고체육교과신규교사는 학교장이 제청한 '박현상'을 최종합격자로 하는 원안대로 임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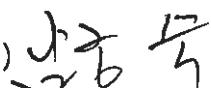
박영창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참석이사 전원찬동)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8학년도 만경고등학교 결원보충을 위한 신규교사는 영어교과는 최종합격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않으며, 체육교과는 학교장 제청 원안대로 '박현상'을 임용하고 해당 최종합격자는 2018년 3월 1일자로 만경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8년 2월 6일 12시 10분

이 사 장 남궁숙(인) 

이 사 최문호(인) 

이 사 박영창(인) 

이 사 이 상 우 (인) 이 죽 두

이 사 박 달 심 (인) 박 달 심

이 죽 두 | 박 달 심

